

2008년도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지원  
신청요강

2007. 10.

한국학술진흥재단  
생명과학지원팀

#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	1
2. 지원방향 .....	1
II. 사업내용 .....	1
1. 지원분야 및 대상 .....	1
2. 지원기간 및 규모 .....	2
3. 지원배분원칙 .....	2
III. 신 청 .....	2
1. 신청자격 .....	2
2. 신청기간 .....	2
3. 신청방법 .....	3
4. 온라인 신청절차.....	3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	4
6. 심사 및 선정 .....	6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7
8. 연구과제 수행 .....	8
IV.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9
1.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	9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9
V. 간접연구비지원 .....	12
※ 별첨 - 심사항목 및 배점 .....	13
※ 양식 - 연구계획서 .....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1. 사업목적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 2. 지원방향

#### 가. 해외방문연구의 내실화

- 방문연구의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어 실질적 필요성에 의한 지원
-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국제적 확산도모

#### 나.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양 및 지역별 특화 전략

- 지역별 점유비율을 설정하여 특정지역 편중 지양
- 특수지역에 대한 별도체재비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다. 학술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역별 균형고려

## II. 사업내용

###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나. 지원대상 :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2. 지원기간 및 규모

가. 지원기간 : 6개월 또는 1년

나. 지원규모

- 6개월 : 1,500만원      ○ 1년 : 2,500만원

※ 특수지역(아프리카, 전쟁유발 지역, 분쟁지역, 연구 회소지역 등) 방문연구는 체재비(500만원 이내) 별도 지원함

### 3. 선정배분원칙

가. 분야별 배분비율 : 인문사회(10억), 이공계(12억)

나. 기간별 배분비율 : 분야별 1년(60%), 6개월(40%)

다. 지역별 배분비율 : 분야별 아래 기준적용

지역별	예산비율	비고
북미지역 등	90%	북미지역 : “기타지역“ 제외지역 = 5 : 5
기타지역	10%	아시아(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제외), 아프리카, 남미(쿠바, 멕시코 포함), 동유럽

- 북미(2) : 미국, 캐나다

- “기타지역” 제외지역 : 북미 및 기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국가

- 동유럽(10) : 러시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 Ⅲ. 신청

1. 신청자격 :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임교원으로서 3년이상( 2004년 11월11일 이전에 전임교원으로 발령 받은 자 )근무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인문사회분야 3편, 자연과학분야 5편 이상 이어야함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기간 : 2007. 11. 05.(월). 09:00 ~ 11. 12.(월). 18:00까지

※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아, 수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없음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연구자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
  -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 「통합연구인력정보」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계획서(재단 소정양식, 연구업적 포함) 온라인 탑재
  - ※ 신청자는 탑재한 연구계획서 1부를 출력하여 소속기관 연구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번역본 포함), 등 증빙서류 : File 업로드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함
  - ※ 신청자는 제반 증명서류에 신청장의 인적사항(성명, 소속학교 등) 신상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후 탑재.
- 재직증명서 서류 제출(학교를 통한 일괄 제출)

### 4. 온라인 신청 절차

#### 가. 온라인 신청 전

- 1) 국내 소속대학(교)을 통해 장기해외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함
- 2) 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함.
- 3) 재단 홈페이지 「통합연구인력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신청기간내)하고 다시 신청해야함)
- 4)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파일 및 증명서(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 자유양식)를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hwp 또는 Ms-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 (※양식 1 참조)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 나.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사항(기본사항, 대표업적) 입력
  - ※ 대표업적은 “Ⅲ-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인문사회분야는 3편, 기초과학분야는 5편을 선택하여야 함
- 2) 연구계획서(연구업적요약문 포함) 파일 탑재
- 3)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 접수번호 확인이 안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 ※ 신청기간 내에 수정은 가능하며, 수정 후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됨
  - ※ 과제번호는 신청마감 2주일 후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각 연구자의 My KRF 화면해서 확인할 수 있음

- ※ 온라인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 온라인 신청기한내 연구계획서 및 기타자료를 작성 또는 탑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 재직증명서 재단에 접수(송부) 및 온라인 기관승인 요청
- 2)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제출 받고 확인함.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07. 11.14.(수). 09:00 ~ 11.16.(금) 18:00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승인함. 승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신청한 교원의 재직증명서를 일괄 재단에 문서로 기한내('07.11.21(금))에 접수하여야함.(미 접수시 신청취소로 간주 함)

##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2003년 부터에서 2007년도사이에 동 사업에 선정된 자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해외방문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 나. 연구 참여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8. 12. 31 이전인

- 과제는 연간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9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이후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이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방문연구 수행이 가능함**

## 6.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 사 내 용	비 고
1 단계	요건심사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최종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단

### 나. 심사방법 및 내용

-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 제 2 단계 심사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100점 (※ 별첨 참조)
- 제 3 단계 심사(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단
  - 심사내용 : 전공심사결과 검토 및 최종선정과제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다. 선정취소

-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고 신고된 자 및 기 연구된 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판정된 자.
-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
- 선정된 후 2008. 12.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 관련서류 미제출자

###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가.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출국일 2개월 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

#### 나. 연구비 관리

- 연구자가 방문연구기간 중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거나 일시 또는 조기 귀국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회수·반납하여야 함
  - 방문연구 중단 :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함
  - 일시 및 조기귀국 :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 조치함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

- 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지급된 연구비 전액회수)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지급연구비에서 보고지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회수) 허위 및 표절 등을 하였을 때(지급된 연구비 전액회수)
  -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8. 연구과제 수행

가. 출국 : 2008. 12. 31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함

나. 연구개시일 : 실제출국일로부터 시작됨

### 다. 연구기간

- 실제 연구기간 : 출국일로부터 기산함
- 보고서 제출 관련 연구기간 지정 : 아래 표에 지정된 연구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연구개시일 (출국일) 연구기간	2008. 3/1 ( '07년12월31일 이전 및 '08년1.2월)	2008. 6/1 ( '08년 3.4.5월 )	2008. 9/1 ( '08년 6.7.8월 )	2008. 12/1 ( '08년 9.10.11월 )	2009/3/1 ( '08년 12월 )
6개월	08/03/01 - 08/08/31	08/06/01 - 08/11/30	08/09/01 - 09/02/28	08/12/01 - 09/05/31	09/03/01 - 09/08/31
1년	08/03/01 - 09/02/28	08/06/01 - 09/5/31	08/09/01 - 09/08/31	08/12/01 - 09/11/30	09/03/01 - 10/02/28

### 라.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단,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또는 이전)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함 **(단. 파견 국가 및 기관 변경은 불가)**
-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계획(연구기간, 과제명)변경 불가

#### 마. 일시귀국

- 연구자는 실제 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하거나 일시귀국 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1년 방문 연구자는 30일, 6개월 방문연구자는 15일)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사전에 “일시귀국 사유서”(자유형식)를 소속 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일시 귀국할 경우,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이 부담함

### IV.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

##### 가. 도착보고서 :

출국(월)	'08. 1.이전 및 07. 1. 2.	08. 3 - 5.	08. 6 - 8.	08. 9 - 11.	08. 12
제출기한	'08. 3	'08. 6	'08. 9	'08. 12	'09. 3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나. 중간보고서( 6개월 연구자는 제외 ) :

출국(월)	01. 1. 1.이전 및 08. 1. 2.	'08.3 - 5.	'08. 6 - 8.	'08.9 - 11.	'08. 12
제출기한	'08. 7	'08. 10	'09. 1	'09. 4	'09. 7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 개요보고서
- 연구요약문(국·영문)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다. 귀국보고서

- 실제귀국 후 1개월 이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첨부 하여 제출

###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결과보고서 평가

#### 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개시일 연구기간	2008. 3/1	2008. 6/1	2008. 9/1	2008. 12/1	2009. 3/1
6개월	'09/02/28	'09/05/31	'09/08/31	'09/11/30	'10/02/28
1년	'09/08/31	'09/11/30	'10/02/28	'10/05/31	'10/08/31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요약문(국·영문)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파일탑재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는 물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최종 연구결과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제출

-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인문사회분야 계열	이공계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전문학술저서	- 국내·외의 수준(SCI&SCIE급) 학술지

- 최종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저술)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013-○○○○○○).”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8-013-○○○○○○).”
- 최종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자(게재논문 또는 저서)에 대한 관리
  - 상기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

된 과제에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 다. 최종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원문정보서비스 등으로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및 연구비 전액회수

####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 V. 간접연구비 지원

- 동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음

####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생명과학단 생명과학지원팀

Tel (02)3460-5621-5. E-mail : [empire@krf.or.kr](mailto:empire@krf.or.kr)

전산관련문의 : Tel (02)3460-5543/5

< 별첨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타당성 (35)	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해당국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가</li> <li>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한가</li> <li>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가</li> <li>연구기간이 적절한가</li> </ul>
독창성 (20)	연구주제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 연구(시도)되지 않았던 주제인가</li> <li>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li> <li>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li> </ul>
	연구방법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li> <li>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li> <li>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li> </ul>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주제인가</li> <li>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li> <li>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li> </ul>
	학문의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국가(지역)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li> <li>해당 학문분야가 희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li> </ul>
	학문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국가(기관)에 국내 연구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필요한가</li> <li>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li> <li>연구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li> </ul>
연구내용 및 방법 (10)	연구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li> <li>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li> <li>포함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li> </ul>
	연구방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li> <li>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li> <li>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li> </ul>
	실행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li> <li>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li> </ul>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 되었는가</li> </ul>
	인용 및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연구역량 (10)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li> </ul>
	연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언어 구사 능력 등)이 충족되는가</li> <li>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li> <li>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li> </ul>

<양식 #1> 이 부분부터 온라인 탑재

# 연구 계획서

(2008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연구기간	·1년 ( )	방문국가		
	·6개월 ( )	특수지역 여부	특수( ) 일반( )	
연구기관명	1.	확정여부	확정( ) 잠정( )	
	2.		확정( ) 잠정( )	
	3.		확정( ) 잠정( )	
출국예정일				

※ 특수지역여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판단할 수있는 근거를 연구계획서 상에 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후 3개 기관이외의 기관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08.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I. 연구계획

※ 이 내용은 참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필요성, 내용 및 연구방법,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총 15쪽 이내(참고문헌 목록 포함)로 국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연구업적요약문, 방문연구 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 등 증빙서류는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Ⅱ. 연구수행계획

### 연구추진계획

년 월 일	연구수행내용	비 고

# 연구업적 요약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연구 참여자수	1명 ( )   2명 ( )   3명 ( )   4명 ( )   5명 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신청관련 FAQ

### ① 2007년도 사업과 크게 달라진 점은?

- 예산 증액 : 2007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되어(19억에서 22억) 선정인원이 증가할거 같습니다.
- 방문연구의 타당성 중요 :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에서 연구해야할 타당성을 충분히 개진해야 선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온라인화 : 각종 보고서 제출방법 (체제지도착보고서, 1년 지원자의 경우 중간보고서)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 BK21/NURI 참여교수에 대한 신청제한을 풀었습니다.

### ② 특수지역이란 무엇이며, 특수지역 신청시 별도의 체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특수지역이란 지금까지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은 연구희소지역을 가리키며, 아프리카 등 오지, 전쟁유발지역, 분쟁지역 등 연구 착수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 특수지역여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판단할 수있는 근거를 연구계획서 상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③ 신청자격에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 해외방문연구를 신청하기에 앞서 소속대학교에 자격여부를 문의하셔야 하며, 재직 증명서를 학교에서 재단으로 접수하도록 요청하여야합니다. 연구자의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소속기관의 확인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학교측(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④ 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의 지원비는 연구비 개념입니다. 해외방문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체재비, 항공료, 자료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정

산은 하지 않습니다.

**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학술연구자정보란'에 지금까지의 실적을 갱신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니, 미리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온라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정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꼭 다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접수 방법은 PDF파일로 연구계획서를 탑재하시는 방법과 같이 증빙서류도 탑재하시면 됩니다. PDF파일로 탑재하셨을 경우, 증빙서류 접수번호가 따로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상에 문제점은 전산담당자께(02-3460-5543/5)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⑥ 2008년 1월 1일 이전 출국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타 신청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단 2007년 1.1이후 출국자), 2008. 3. 1부터 연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단의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업을 완료한 후 수행 가능하므로,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가 연구개시일이 될 것입니다.

**⑦ 방문연구기관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가 다양해도 관계 없나요?**

- 방문연구기관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을 고루 선택해 최적의 기관을 확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 국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1개국에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후 연구기관변경은 신청한 3개 기관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⑧ 기초연구과제(단독)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선정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과제가 선정된다면 2008년 11월 30일까지가 연구기간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할 수는 있나요?**

-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구과제(단독)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시고자 한다면, 출국일을 기

초연구과제가 끝나는 2008년 11월 30일 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

⑨ **출국일로부터 1년동안 방문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정된 연구기간은 실제 연구기간과 다릅니다. 그때까지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건가요?**

- 연구개시일 지정으로 인해 설정된 연구기간은 보고서 제출만 관련됩니다. 실제 연구기간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1년으로 생각하시고 체류하시면 됩니다.
- 일시 귀국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에 따른 연구비 환수도 실제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그러나 전산 상에 연구기간은 지정된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1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월급이 나오면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소속기관의 월급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방문연구 성격을 지니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하셔야 합니다.

⑪ **저는 1년 연구를 예정하고 있지만, 재단에는 6개월 연구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정한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끝내고 반드시 귀국해야 하나요? 연구계획 연장도 가능한가요?**

- 6개월 연구자에 한해, 6개월 연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에 따른 경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연구기간의 연장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 1년 연구자도 연구기간 종료 후에 해외방문국에 얼마 동안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⑫ **선정가능인원은 몇 명입니까?**

- 대략 11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⑬ **저는 연구교수(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은 소속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가 가능한 전임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단에 문의하기 전에 소속 학교

에 방문연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주시오.

⑭ **증빙서류는 원문으로 제출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땐 원문과 해당언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번역문은 공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